

현장에서 바라본 언론의 법적 환경 변화

이 희 용

연합뉴스 대중문화팀 차장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
□ 세계일보 종합교양부·생활부 기자
연합뉴스 문화부·여론매체부 기자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신문들은 지난 7월 28일부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대에 접어들었다. 80년대 언론기본법 시대에서 90년대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법) 시대를 거쳐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시대를 맞은 것이다.

이번에 발효된 언론관계법은 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오랜 논란 끝에 올해 1월 1일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으나 시행도 해보기 전에 위헌 소송이 제기되는가 하면 발효를 전후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잇따라 개정안 발의에 나서는 등 제정과정 못지않게 순탄치 않은 앞길을 예고하고 있다.

입법 배경과 과정, 이를 둘러싼 정치적 시비와 법적 논란은 이미 여러 언론보도와 논문 등을 통해 비교적 소상히 알려졌다. 그러나 법 시행과 함께 언론

환경이나 관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일선 언론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 글에서는 언론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일선 언론인들이 법적 환경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보고, 실제로 언론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점쳐본다.

II. 언론중재법

1. 언론중재법이 주목을 끌지 못했던 까닭

언론들은 신문법에 대해서는 과열됐다 싶을 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여 왔으나¹⁾ 언론중재법에는 무심하다 싶을 정도로 '외면'해왔다.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고 보도 가치도 크지 않다고

1) 아마도 '국가보안법'이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치고 최근 몇 년 사이 신문 지면에 가장 많이 등장한 법률이 아닐까 싶다.

중재제도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
그러나 새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인해
언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돼

판단했을지는 모르나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신문법에 비해 훨씬 실생활과 밀착된 법률이다. 만일 신문들이 피해구제 절차가 쉬워지고 대상도 넓어진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언론중재법 제정의 명분을 확인시켜주는 일일 것이다. 혹시 피해자의 인격권을 존중하지 않았던 '원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어 잠자코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언론인들은 신문법 제정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논조와 입장을 떠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지녀온 것으로 짐작된다. 처음에는 일련의 언론개혁 정책을 언론자유 탄압이라고 주장해온 언론들까지도 인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지 않았다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언론에 미칠 파장이 알려지자 그동안 언론이 부려온 횡포를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해온 기자나 신문들마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법 개정으로 단지 불편해졌다거나 좀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면 취재의 의욕이 위축돼 감시 기능이 크게 약화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²⁾는 한동안 일부에서만 거론돼 메아리를 울리지 못하다가 시행령 제정 작업까지 모두 끝난 뒤에서야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신문협회도 발효 직후 회원사 관계자들을 불러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대처방안을 논의하는가 하면 현업 언론인 단체나 관련 학자들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속속 내놓고 있다.

1980년 언론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언론중재제도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정식 재판절차

를 거치지 않고도 손쉽게 반론보도 등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언론 입장에서선 예전에 비해 부담이 늘어난 것일 수 있겠으나 유죄나 패소 판결 혹은 손해배상 등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 전에 피해자와 화해와 조정의 여과장치를 거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아왔다. 중재위원의 상당수가 언론인이거나 언론에 관해 잘 아는 사람이어서 비교적 언론의 취재 보도 관행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거부감을 줄이는 데 한 몫했다.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기되면서도 언론중재제도가 정간법과 방송법 등에 분산 유지돼왔고, 이번에 단일법으로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언론계가 언론중재제도의 존재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을 제정하면서 언론의 취재 보도 현실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구제에만 초점을 맞춘 듯한 일부 조항이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우려가 생겨나게 됐다. 신청절차가 간편해져 언론중재 신청이 남발되지 않을까, 전치주의가 폐기돼 조정 기능은 약해지고 소송이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진실이 가려지기도 전에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생겨나지는 않을까, 제3자가 시정권고 조항을 의도적인 흠집내기로 악용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등의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2.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무게

서울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을 지낸 윤재윤 서울

2) 언론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진영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반개혁적 움직임으로 보는 시선도 존재했다.

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저서 「언론분쟁과 법」에서 “기자는 사건의 맨 앞에 한 다리를 들고 불안하게 서 있고 법관은 사건의 맨 뒤에 골치가 아파서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다”고 표현했다. 언론보도는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드러난 최소의 불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실 구성을 할 수밖에 없어 법관에 비해 숙명적으로 매우 불행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엄격한 증거만으로 재판을 하는 법관의 눈에는 ‘야생마’이자 ‘모험가’로 비치지만 이러한 언론 보도 없이 사회가 존립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은 일찍이 언론보도의 공익성과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본 원칙을 세워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1988년 10월 11일 대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³⁾ 즉 공공성과 함께 진실성이나 상당성이 있으면 면책되는 것이다.

언론중재법 제5조는 “언론은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뤄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여기서 인격권을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

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진실성과 상당성에 대한 규정은 없이 피해자의 동의와 공익상 필요만으로도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인격권을 명예뿐 아니라 상당히 폭넓게 정의하는 반면 위법성 조각 사유는 ‘중대한’이나 ‘부득이하게’ 등의 표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격권 보호를 지나치게 앞세움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기우가 아니다. 이제는 계절 변화에 맞춰 거리를 오가는 시민의 표정을 담은 사진도 일일이 동의를 얻고 난 뒤에 실어야 할지 모른다는 불멘소리가 나온다.⁴⁾ 이런 사진이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득이하게’ 그 사람들이 아니라면 안 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더욱 걱정스런 대목은 권력을 지닌 공인에 대해서도 취재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공인의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례가 확립돼 있고 법원도 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은 한계가 모호해 인격권 보호 논리가 힘을 얻을 경우 취재를 지레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지도 모른다.

3. 정정보도 청구권 확대가 지닌 위험성

언론중재법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정보도 청구권을 대폭 확대한 점. 종래에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때 손해의 배상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권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하며”(제14조 제2항), “정정보도 청구 등의 소를

3) 대법원 1988.10.11. 85다카29 판결.

4) 미리 동의를 얻으면 자연스런 사진을 찍기가 어렵다.

새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권 및 시정권고 조항은 언론 활동에 부담줄 수 있어

제기할 때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6조 제4항)고 규정해 별개의 권리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제14조 제1항)라면 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합법적인 보도”, 즉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 보도라도 잘못된 보도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위헌 논란이 빚어지는 대목의 하나도 바로 이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1년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 청구권은 그 자체가 인격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여론의 형성을 위한 도구인 것일 뿐 진실을 발견하여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합헌을 선언했다.⁵⁾ 그러나 언론중재법은 반론보도 청구권과 다르게 ‘진실을 발견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정정보도 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독자적인 편집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제26조 제6항에서는 “정정보도 청구 등의 소 제기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27조 제1항은 “정정보도 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잘못된 보도를 신속하게 바로잡지 않으면 뒤늦게 정정보도를 해도 피해구제의 효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충분한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판단을 내려도 오판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터에 신속한 피해구제에만 초점을 맞춰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언론으로서는 역울한 일을 당하기 십상이다.

실제로도 각종 권력형 비리나 의혹사건의 진실은 정권이 바뀐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건이 보도된 뒤 핵심 관계자들이 진실을 은폐한 채 잘못된 보도라고 주장할 때 언론이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정정보도를 해야 할 일이 줄을 이을지도 모른다.

4. 시정권고 남발되면 언론사 이미지 실추

가장 위헌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언론사로서도 가장 부담스런 대목이 시정권고 조항이다.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에서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으며 제2항은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비록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기는(제32조 제4항) 하지만 중재위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어(제32조 제5항) 신뢰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는 크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언론중재법 제32조 제3항은 중재위가 시정권고 기준을 정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 11일 발표된 규정에는 ▲사생활 보호 ▲명예훼손 금

5) 헌법재판소 1991.9.16. 89헌마165. 판결.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지 ▲범죄사건 보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유괴사건 보도 ▲범죄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보도 ▲마약 및 약물보도 ▲폭력묘사 ▲충격·혐오감 ▲재판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국가기밀 누설금지 등 대부분 수긍할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언론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관행과 풍토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구석이 많고 일선 언론인에 대한 교육도 부족해 보인다. 피해자가 일일이 구제를 청구하기 이전에 언론 스스로 개선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나 신문윤리강령 등에 이미 마련돼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제3자가 방송위원회나 신문윤리위원회 등에 불만처리 형태로 제기할 수도 있다. (미흡하기는 하지만) 방송법이나 자율심의 조직을 통해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데 옥상옥 식의 기준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사법기관으로서 분쟁을 해결해야 할 중재위가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언론 현실에서는 보호해야 할 법익과 보도를 통해 이루려는 공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헌법이 사생활 보호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우선할 때는 예외로 인정하는 것처럼, 오로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개인적·사회적 법익이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침해당할 수도 있다.

한계가 애매한 표현도 있다. ‘상세히’,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문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표현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많다.

더욱이 특정 시민단체가 특정 언론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시정권고 신청을 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안티조선’ 운동을 하는 단체는 조선일보를 표적으로 삼아, 반복 친미 성향의 보수단체는 한겨레신문을 겨냥해 경쟁적으로 사사건건 문제를 지적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5. 언론이 타율 규제 자초한 측면도

언론중재법은 피해자가 중재위에 손해배상 조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이뤄진 것이다. 언론중재법 자체에 반대해온 일부 신문은 “언론중재위가 손해배상에 관해 강제조정을 하거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중재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친 표현이다.

중재위의 직권조정 결정은 어느 한쪽의 이의신청이 없을 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23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결정도 쌍방이 이를 따르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않는다(제24조 제1항과 제25조). 이른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동원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신청 절차가 간편해졌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는 적지는 않은 부담이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제30조 제2항에서 ‘법원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해배상액이 이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하고 있다.

새 언론중재법에 대한 '운용의 묘'를
잘 살려 실질적인 약자를 위한
언론피해구제 수단이 되도록 해야

이와 함께 정정보도 청구 시한과 신청인 자격 등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는 등 절차가 완화돼 조정·중재신청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제22조 제4항)”는 조항은 언론사 관계자의 법원 출입을 더욱 잦게 만들 것이다.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삭제해 중재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강제성이 없는 조정·중재 절차를 거치다가 시간만 잡아먹는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 역시 법원의 언론관련 소송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어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고, 중재위의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

고충처리인 제도⁶⁾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인들이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가톨릭대 법학부 박선영 교수도 임의조항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부담을 덜고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제대로 된 언론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타율 규제를 자초했다는 반성도 있다.

6. 언론이 신중함을 넘어 소심해진다면

적어도 80년대까지는 써야 할 기사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권력의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더욱 신장돼야 한다는 명제에 ‘감히’ 도전하지 못했다. 90년대 들면서 언론을 짓눌러온 권력의 족쇄가 사실상 풀리고 개인의 권리의식도 높아지면서 언론도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 결과 언론중재법 탄생으로 빛을 본 것이다.

사실 그동안 언론은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힘없는 개인에 대해서는 횡포에 가까운 권력을 행사해왔다. 한번이라도 언론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피해를 구제받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절감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통명스런 반응에 기분이 상한 것은 보통이고 “앞으로 재미없을 수도 있다”는 은근한 협박까지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언론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기업이나 연예인 등은 언론과 사이가 틀어지면 상당한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

반대로 한번이라도 소송에 시달려 본 언론인들은 기사를 다 쓴 뒤 마침표를 찍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언론중재법은 지금의 언론 환경을 개선하고 취재 보도 관행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힘없는 개인이 아니라 힘 있는 권력집단 - 정치권력이 됐든 자본권력이 됐든 사회권력이 됐든 종교권력이 됐든 - 이 진일보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힘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라 하더라도 법에 보

6) 언론중재법 제6조 제1항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장된 피해구제 수단을 활용할 권리가 있지만 전략적 봉쇄소송의 일환으로 남용한다면 언론중재법의 제정 취지를 빗바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만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법칙이 여기서도 통한다면 언론인들이 신중함을 넘어서 소심해지거나 비겁해지는, 그래서 언론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비판의 기능마저도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새 중재위에 운용의 묘를 간절하게 바라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Ⅲ. 신 문 법

1. 국제적 시빗거리로 떠오른 신문법

언론중재법과 함께 발효된 신문법은 국제적으로도 시빗거리로 떠올라 있다. 2001년 초 언론사 세무조사를 계기로 정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부터 국제언론인협회(IPI)와 세계신문협회(WAN) 등이 꾸준히 반대 움직임을 보여왔고 지난 5월 30일 WAN 서울총회 때는 외국 언론인과 국내 정부 요인이 공방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개막식에서 환영사에 나선 계빈 오라일리 회장 대행⁷⁾은 “한국은 아직도 완벽하게 언론 자유를 얻지 못했다”며 신문법을 장애물로 지목했다. 이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언론 권력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은 더욱 컸다.

한국 정부와 세계 언론인들의 시각 차이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세계편집인협회(WEF) 회원들과 가진 오찬에서도 이어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신문 발행부

수를 제한해 독자의 선택권을 막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이 총리는 “독과점 언론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제한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신문법을 둘러싼 갈등은 총회가 끝날 때까지 행사장 안팎에서 계속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성명을 통해 “WAN이 한국의 언론 상황도 모른 채 일부 족벌 언론의 시각을 그대로 담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하는가 하면 신문법에 대해 찬반 입장을 보여온 신문과 인터넷 매체들도 지면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간법을 개정한 신문법의 골자는 ▲인터넷 신문 등록 규정 마련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1개사 30%, 3개사 60%로 강화. 단 10% 미만 사업자는 제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개사 50%, 3개사 75%)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 조항 신설 ▲신문발전기금 조성 등.

당초 여당은 시민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해 신문사주의 지분 제한 규정을 법안에 담으려다가 철회한 데 이어 야당과 협의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기준을 전국 발행부수로 완화하고 편집위와 편집규약도 임의규정으로 바꾼 뒤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을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은 “개혁성이 실종된 누더기 법”이라고 비난한 반면 조선·동아일보 등은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악법”이라고 공박하며 위헌 소송까지 제기해놓았다.

이러한 공방은 신문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도 재현됐다. 문화관광부가 공청회 등을 거쳐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과 편집위 구성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안을 5월 9일 확정하자, 이른바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입법과정에서 야당과 학자들이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해 여당이 거둬들인 문제 조항을 되살려놓았다. 편집위 구성은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왜 정

7) 6월 1일 폐막식에서 회장으로 선임.

신문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은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막는 것

부가 간섭하는가”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반대로 한겨레신문·언론노조 등은 이에 대해 “언론의 방종을 막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며 여론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박하는 한편 신문발전위원의 자격 요건이나 신문발전기금의 조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은 ‘날 없는 칼’

보수 성향의 신문들과 단체 등이 문제 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공정거래법상 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유독 신문에 관해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찬성 쪽에서는 여론 독과점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상품보다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신문 규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신중해야 하며 여론 독과점도 전체 매체 시장을 놓고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신문시장 구도에서 이 기준에 저촉될 신문은 없다. 제17조에서는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

간신문(정보전달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되는 일간신문 제외) 가운데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 비율’을 따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⁸⁾ 독과점적 언론으로 지목받고 있는 조·중·동의 비율은 지방지와 전문지 등을 합치면 40% 남짓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은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설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더라도 신문법상 불이익은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제34조 제2항)뿐이다.⁹⁾

따라서 “정당의 지지도나 TV 드라마의 시청률도 높으면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몰아붙이는 일각의 주장이나 “특정 신문의 점유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독자가 신문을 사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는 해외 언론인의 질문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다.

이런 조항을 두자고 한 배경에는 현재 서울에서 발행되는 전국 대상의 종합일간지 가운데 세 개 신문이 7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모두 보수 성향이라는데 있다. 이런 점이 반대로는 특정 신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악법의 근거로 거론되기도 한다.

8) 신문법 제17조 (시장지배적사업자)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정보전달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 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30 이상
2.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60 이상. 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9) 신문법 제34조 (기금의 용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무료로 제공 또는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사업자
2.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

비록 '날 없는 칼'이 되고는 말았지만 억강부약(抑強扶弱)을 통해 여론 시장의 다양화를 꾀하려는 취지가 비로소 법률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점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안게 됐다.

3. 조·중·동 기금 지원 걸림돌은 제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은 현재 시장구도에서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데 비해 신문발전기금의 설치 규정(제33조 및 제34조)¹⁰⁾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신문시장 구도는 물론 전체 미디어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를 둘러싼 논쟁은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됐다. 문화부는 시행령 제28조에 ▲독자 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자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편집규약을 제정해 정기적으로 운용하는 자 ▲상업광고가

정기간행물 등의 연간 평균 발행면의 50%를 넘지 아니하는 자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에 경영투명성·공정성 등 위원회가 정한 우선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등을 기금의 우선지원 조건으로 정했다가 일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우선지원 조건을 조·중·동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부에 비판적인 메이저 신문들은 배제하고 친정부적인 마이너 신문을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도 하다. 일단 이들이 상대적으로 사주(社主)의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광고비율도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1월 미디어오늘이 18일치 지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면 대비 광고란 비율(돌출광고 제외)은 조선(53.52%), 중앙(53.02%), 동아(52.95%), 한겨레(39.20%), 경향(39.11%), 한국(36.45%), 국민(36.26%), 문화(36.17%), 세계(35.18%), 서울(34.12%) 순이었다.

이에 대해 신문개혁을 주장해온 진영에서는 ▲광

10) 신문법 제33조 (신문발전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신문 등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에 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신문법 제3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1. 여론의 다양성 촉진과 신문산업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한 사업
2. 독자 권익 보장을 위한 사업
3. 신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4. 언론공익 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무료로 제공 또는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사업자
2.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

③위원회는 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신문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에 있어 자금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고가 지면의 절반을 넘어서면 광고지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고 ▲여론 다양성을 위해 마이너 신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편집권 독립이나 경영투명성 등 언론개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명분을 들고 있다.

이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경영투명성 등 마지막 조항은 빠지고 나머지 4개 조항 중 하나만 충족하면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제27조)¹¹⁾ 바뀌었다. 이른바 조·중·동도 기금을 지원받는 데 1차적인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다.

4. 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 얻는 교훈

정부가 신문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정부를 향한 비판의 칼날을 무디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매체간·신문간 균형을 위해서나 저널리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신문에 공적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영상세대의 증가, 인터넷의 확산, 뉴미디어의 등장 등으로 신문산업이 위기에 놓여있다고 보는 인식이 깔려있다.

만일 지원 자체가 대세라면 결국 초점은 신문발전기금 관리·운용을 담당할 신문발전위원회 구성과

지원대상 심사의 공정성에 모아진다. 현재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신문업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속단할 수 없지만 일단 2004년 3월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2005년 1월 일부 개정)의 시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 듯하다.

지역신문법은 지원 대상으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 ▲광고 비중 50% 이상¹²⁾ ▲한국ABC협회 가입 ▲발행인 등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경우 등 4가지(제16조)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이 정한 우선지원 대상 규정은 ▲편집규약 제정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미납액이 없을 것(제13조) 등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모범과 시행령 기준을 따진 뒤 ▲소유지분 분산 정도 ▲부채비율 ▲연수사업 참여도 ▲지역사회 기여도 ▲자율강령 준수도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 지난 7월 19일 일간신문 5개, 주간신문 27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역신문발전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때도 두 명의 위원이 물러나는 풍파를 겪었고 지원대상 선정이 끝난 뒤에도 위원장을 포함한 두 위원이 사퇴하는 소동을 빚었다. 문화부가 일간지에 대한 배려 부족과 지역간 형평성을 들어 재심을 요청한 것을 두고 전

11) 신문법 시행령 제27조(기금의 우선지원)

신문발전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이하 “정기간행물등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자.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편집규약을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운용하는 자.
3. 상업광고가 정기간행물등의 연간 평균 발행면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자.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자.

12) 이때는 시행령도 아닌 모범에, 우선지원 대상도 아닌 지원 대상으로 못 박았는데도 조·중·동은 자신들이 관계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문제 삼지 않았다.

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반발했는가 하면 전국지방신문협회는 선정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역신문법 제정을 주도한 신문은 탈락하고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신문이 선정돼 명암이 엇갈리기도 했고, 특정 연대 소속 주간지가 상당수 포함된 것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곳도 있었다.

어떤 선정결과를 내놓아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첫술에 배가 부를 리도 없겠지만, 투명하고 공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지원 관행을 쌓아나간다면 지역신문에 힘을 북돋워주면서도 건전한 언론환경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문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우선지원 조건이 완화돼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정하고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 훨씬 문제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더 높은데다 이념적 성향이나 정부와의 친소관계 등까지 얹혀 정쟁으로 번져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5. 공동배달체제 마련은 신문 산업의 인프라

신문법 제37조의 신문유통원 설립을 둘러싼 논란 역시 신문발전기금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이를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신문유통원을 만들면 신문사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질을 통한 경쟁이 가능해지며, 독자들도 신문을 비롯한 정기간행물을 골라서 받아볼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과전에서 공동배달제 시범사업을 펼쳤다가 쓴 잔을 마셨던 마이너 신문사들은 초기 자본이 없으면 전국 단위의 공동배달사업이 조기에 정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국고 지원 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반대 진영도 신문유통원 설립의 취지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정부가 예산과 인사권을 지닌 기구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조·중·동 입장에서 볼 때 수십 년 동안 투자와 관리를 통해 쌓아올린 배달망의 비교우위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속마음도 깔려 있다.

그러나 조·중·동도 지국별로 위탁 계약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데 동의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배달 원가를 건지기가 힘들어 공동배달체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광고와 구독료 수입이 보통 8대2 정도로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신문사 입장에서는 뉴미디어의 잇따른 등장으로 광고시장의 몫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구독료 비중을 높여야 한다. 기사에 미치는 광고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인터넷과 무료신문 등에 뉴스가 넘쳐나는 마당에, 유료방송·휴대폰·인터넷 등 정보이용료는 갈수록 치솟고 있는 터에 신문 구독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무가치나 경품을 받아가며 신문을 봐온 독자들을 설득시키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배달 원가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안정적인 정기구독자를 확보해야 하는 주·월간지 역시 마찬가지다.

신문유통원이 신문을 비롯한 오프라인 정기간행물 산업의 인프라로 자리 잡는 것은 저널리즘의 장래와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설립돼 운영되느냐에 따라 신문 산업의 촉매가 될 수도, 신문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벌써부터 공동배달제에 참여하고 있는 신문사들이 문화부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금액 규모를 놓고 반목이 불거지고 있다.

국고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조

바람직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언론관계법 논의가 되도록 해야

기에 안정적인 수지구조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도 배달망이 취약한 시·군 단위부터 시작하는 것도 조·중·동의 참여를 유도해 갈등을 줄이고 공적 자금의 투입 명분도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IV. 맺음말 - 언론법 개정 논의의 틀을 바꾸자

비록 제정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통과 이후에도 찬반 양쪽 진영에서 비판을 받으며 제대로 시행도 해보

지 못한 채 위헌 시비와 재개정 논의에 휩싸여 있기는 하지만 신문법이 발효된 것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이제는 신문도 전통적인 의미의 언론 자유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게 됐다. 신문법 제4조는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신문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힘쓸 것을 명시하고 있다.¹³⁾ 사회적 책임 이론과 시민단체의 요구 등을 반영한 것이다.

독자권익위원회(제9조)와 편집위원회(제18조)¹⁴⁾ 설치를 명문화한 것은 임의조항이어서 당장 신문사

13) 신문법 제4조 (정기간행물 등의 사회적 책임)

- ①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여야 하고,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여야 한다.
- ④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신문법 제9조 (독자권익위원회)

일반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문법 제18조 (편집위원회 등)

- ①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간행물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편집위원회는 일반일간신문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집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편집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편집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편집위원회의 구성·권한·조직·위원의 임기·신분보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편집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 및 공정성의 보장에 관한 사항.
 3. 편집위원회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
 4.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5. 편집의 기본적인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사항.
 6.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에 대한 사항.
 7. 편집·취재와 관련한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
 8. 편집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편집방향의 심의·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독자권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독자의 권익보호, 독자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법 제정 이전에도 일부 신문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다. 법 조항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앞으로 언론사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가 일반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법은 신문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대신 지원 대상으로서의 성격도 분명히 했다. 법의 이름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지만 세부 조항들을 보면 '출판진흥법', '영화진흥법', '뉴스통신진흥법', '지역신문발전지원법' 등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산업 진흥 차원에서 접근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물론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이제는 정간법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각도로 신문산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인터넷 신문이 뒤늦게나마 언론으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매체의 역동적인 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범(汎) 규범으로서 얼마나 효용을 가질지 걱정되기도 한다. 이미 신문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인터넷 신문의 정의를 놓고 논란을 벌였고, 최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뉴스에 대해 6시간 이내에 반론권을 수용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¹⁵⁾

법률이 담고 있는 정신은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구체적인 조항은 '미디어 빅뱅'으로 표현되는 융합과 변혁의 시대를 규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언론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는 물론 관련 이해당사자들까지도 수용자의 권익이나 미디어산업의 진흥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정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법령 개정이 늦어져 시대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정당한 타협의 산물로 어정쩡한 조항들이 뒤섞여 있는 사례가 자주 발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의 거울이자 목탁이어야 할 언론이 그나마 시대적 추세나 수용자 요구에 뒤처지는 언론 관련법의 변화 흐름마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언론은 언론을 둘러싼 법적 환경 변화를 앞장서서 이끌지 못했음을 반성해야 한다.

이제 앞으로의 언론 관련법 논의도 소속사의 이해관계나 이념적 성향에만 매달려 해묵은 공방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미디어 환경을 위해 중지를 모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

15) 일명 '그린박스' 제도. 그린박스는 인터넷 보도의 대상자가 원할 경우,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해 '내용 보완', '경위 해명', '사과', '오류 정정' 등의 내용을 담은 당사자의 이메일 소명문을 기사와 함께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때 소명문 게재를 요청받은 인터넷 언론사는 이로부터 6시간 이내에 소명문을 게재해야하며 소명문의 게재 위치는 기사 본문과 기사 하단 네티즌 댓글 사이에 박스 형태로 삽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관련 기사에 소명문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에 따라 그 기사가 공급된 타 인터넷 매체(포털사이트 등)에도 동일한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